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 23.(수) 14:33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1인)

---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3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  
서는 외부 회의참석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정책국 및 방송기반국 소관 안건의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04-009)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동석 지방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일 (주)삼라가 신청한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 현황입니다. 최다액출자자가 변경 전에는 한국프랜지공업(주)에서 변경 후에는 (주)삼라가 됩니다. <4> 주요내용의 <가>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최다액출자자의 사회적 신용, 지역성 구현 가능성, 방송사 경영능력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 등에 적합한 인사 7인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와 구성(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 심사 항목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항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심사 방안입니다. 심사위원별 총평 및 심사 사항별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의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승인 여부 및 승인조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울산방송은 한 22년간 울산 지역사회에서 주요 방송사로서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대주주가 43년 만에 167억원 적자가 생겨서 도저히 팔수밖에 없다고 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업적 거래까지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것이 일반기업의 인수합병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언론사를 인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공적책임, 또 공익성·공공성이 얼마만큼 구현될 것이며, 특히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지역의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또 지역성을 얼마나 구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라마이더스라는 기업이 M&A를 전문으로 하는, 혹평을 하자면 '기업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22년간 지역사회에서 지역 여론을 반영해 왔던, 대변해 왔던 대표적인 언론사가 외지의 어떤 기업으로 합병이 되는 데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처에 그런 지역사회에 외지 기업이 인수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신청서류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에도 그런 것이 첨부되어서 들어온 서류는 없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지역민들의 반응은 우리가 전혀 감지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당초 노조 등을 통해 반발기류가 있었는데 삼라 쪽에서 고용승계나 조건 등을 다 인정해서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시다시피 삼라마이더스는 호남에 기반을 둔 M&A 전문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삼라 쪽에서는 울산방송 쪽에 와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동서 지역감정의 완화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런 좋은 뜻도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어떤 영업적 이익을 겨냥해서 혹시 언론사를 인수해서 득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라 쪽 경영수뇌부가 와서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해운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항 진입은 힘드니까 울산항을 자기들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사를 인수하겠다는 목적이 그야말로 공적책임

이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업에 언론사를 이용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확실하게 분명히 걸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사무처에서 잘 준비해서 심사위원단을 꾸릴 때 그야말로 사회적 공적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론사 지역민의 반발이 접수가 안 됐다면 제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심사를 정말 엄격하게 해서 그런 기업사냥꾼들이 언론사를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마구 인수합병한다면 우리 언론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울산방송의 노조가 인수합병을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경시위 비슷하게 삼라에 가서 경영진을 만나고 난 뒤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100% 고용승계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겠으나,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혹시나 노조의 어떤 요구가 그런 인수합병의 조건이 되어서 이면합의라도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방송이 적자가 나고 있는 언론사인데 노조가 무리하게 복지나 회사 경영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또 인수기업이 그것을 용인하고 함께 그렇게 간다면 울산방송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면합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심사위원들이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앞서 김석진 위원님이 중요한 사안들을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민방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지역방송의 운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서 최다액출자자의 사회적인 신용이나 재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적인 책임, 지역성의 구현 가능성 그리고 방송사 경영능력들을 중점 심사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다액출자자인 (주)삼라의 방송사업 진출 이유에 대해 매우 집중적인 검증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삼라가 아시는 대로 울산지역의 비연고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민방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대부분 해당 방송구역에 연고로 둔 기업이었음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공정위에 의하면 SM그룹이 2017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가 무려 148개에 이릅니다. 매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라가 소속된 SM그룹

계열사가 울산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 점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방송의 영향력이 최대주주의 사익 추구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울러 울산 방송이 지난 2016년에 7억 5,000만원, 그리고 2017년에 10억원, 작년에도 최소한 15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올해도 내부적으로는 약 25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경영수지, 경영목표가 최대주주 그리고 신임 경영진에 있어서는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는데 다른 부분은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적자가 난 민방을 제대로 살려서 근본적인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투자, 기술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상의 적정성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겠는가 하는 안정성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역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역성, 적정성 여부를 다루는 것은 결국 시청자·소비자 분야에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하실 분 중에서 각별히 지역성을 면밀히 볼 수 있는 분으로 인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노조와 삼라 측에서 이미 합의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민방 가운데는 사업자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고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시점에서 고용승계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잘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협의가 잘 됐는지까지 심도 있게 봐야 실제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해 온 울산민방이 새롭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울산방송은 유보금이 있는지 아십니까? 재정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노사가 비밀 합의를 통해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용승계 정도는 좋지만 지금 방송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조치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해 콘텐츠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 없이 자기들 고용승계나 앞으로 임금인상에만 혹시 합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아마 김석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염려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측과 노사 간 비밀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건전한

것이 되어야지, 급변하는 방송환경, 지역지상파 방송들의 매우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자기 경영의 합리화나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뼈를 깎는 아픔도 감수해야 하는 방향으로도 이야기가 됐어야 할 텐데 일방적으로 고용승계와 고용안정, 그다음에 보수로만 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텐데 아마 그런 것은 공개하지 않겠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 보고, 적어도 심사 과정에서 노사 양측을 다 불러서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허가해 줄 때는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콘텐츠 투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혹시 변경승인이 안 된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찾아보기로 하고,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왜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역민방들이 다 힘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계속 이루어질 텐데, 특히 공공채를 쓰는 지상파의 언론사를 인수하겠다는 사업자의 기본적인 양식이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재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M&A를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또 공익이 가장 중요한, 공적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제시하는 특히 지상파 방송사인데 영리가 최종 목표인 일반기업에서 건설회사도 마찬가지 해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M&A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 집단이 지역의 방송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에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면합의에 의해 째짜미가 이루어지는 노조와 또 새로운 인수자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수자가 콘텐츠에 투자하겠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성을 구현해서 재력이 조금 있으니까 많은 자체제작을 내겠다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내서 영리에 언론사가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자세로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에 어떻게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그런 청사진을, 사업계획서를 강하게 요구해서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9-04-010)**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씨제이헬로 하나방송 재허가에 대해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입니다. 첫째, (주)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시청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주)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씨제이헬로 하나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5일~6일까지 과기정통부가 재허가 심사를 했고, 12월 17일 방통위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 1월 14일 방통위는 재허가 사전동의 약식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송, 법률, 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기정통부의 심사의견서, 사업자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주)씨제이헬로 하나방송에 부가한 <붙임 2>의 재허가 조건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 11월 재허가부터 권고사항으로 부가된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접근권 향상,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권고사항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약식심사위의 의견제시 내용과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씨제이헬로 하나방송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이 재허가 사전동의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곧 올해 안에 씨제이헬로 마산방송이 합병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서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되어서 신청이 들어간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아니고, 씨제이헬로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12월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직 정식으로 신청 접수가 될 정도로 진전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예상해서 조건을 추가하지 않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허가가 되는 예가 있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과기정통부에서는 재허가 조건이 미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허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의 경우에는 최대액출자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재허가 조건으로 그것을 이행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존 사업계획의 이행이나 재허가 조건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 동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약식심사위원회 의견을 보니까 합병에 따른 양사의 합병 전 자체제작비 비율이 합병 후에 축소 감소되지 않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과기정통부 조건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심사위원들 의견입니다. 합병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합된 것처럼 통합 이후 운영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향후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심사위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졌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님들은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검토했고 이미 공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대외적 공표된 사항으로 인정하고 심사를 했지만,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너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사업 계획서를 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심사위원님들도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물론 인허가 부서가 과기정통부고 우리는 사전동의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기

정통부가 하나방송의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1월 중 이달 안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1월 23일 오늘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는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낸 조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라는 조건을 부가해서 붙여왔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 자로 시정명령이 나갔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정명령 내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행하지 못한 금액을 합병 후에는 추가로 투자하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투자하라는 부분이 재허가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만약 이 합병이 원활하게 성사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진행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허가 조건에 이미 이행하라는 조건 자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합병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행해야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허가 부서가 과기정통부니까 충분히 예상해서 부가조건을 다 냈다니까 할 말이 없고, 우리가 붙인 권고사항이 2가지이지 않습니까?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2가지 권고사항을 우리가 붙였는데 이것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더 투자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지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부분은 쉽지 않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도 사전 동의지만 조건을 낼 수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서도 이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권고사항으로 붙이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권고사항으로 붙이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이 100% 될 수 있다고 담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이라 하면 말 그대로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우리는 권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익과 장애인복지채널 저가상품 편성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를 묻고 싶고,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예시로 들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표현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돈이 드는 일인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안건에도 있지만 2016년 11월부터 저희가 재허가 사전동의하면서 씨제이헬로 계열 사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인 조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방송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붙이기가 사업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번 재허가 한 텀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허가를 부가할 때는 좀 더 다른 문구를 생각해서...

○ 김석진 상임위원

-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구체성을 띠어서 법적제재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권고사항이라도 뭔가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표현과 예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보고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재허가 심사를 꼼꼼하게 잘한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자 이행 실적 미흡에 대해 합병 후에라도 반드시 반영토록 한 조치나 지역채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라, 그리고 SO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PP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조건을 부여한 것, 또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실화, 특히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조건 등 지역 SO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부가했다고 봤습니다.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이 씨제이헬로 마산방송과 합병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추가한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의 저가상품 편성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사업 확대 노력 기여 권고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이 결국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를 면밀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약식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 심사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심사점수가 650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약식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된 것이니까 저는 다른 이의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사유입니다.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및 중요 평가 항목 배점을 확대하고, 유사항목 통합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역성 지수 평가 개선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작년 연말에 연구결과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 사항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는 평가항목을 명료화 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평가지표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거나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및 중복 평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항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삭제된 지표의 점수는 각 평가 항목 내의 지표 점수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조정된 항목 배점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사 항목을 통합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유사하므로 통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자 의견수렴 항목과 시청자 불만처리 항목도 유사하므로 통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점 비중 변경 및 간소화입니다. 현재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서 평가 대상방송사에게 평가 우선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 평가 항목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은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점 확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배점을 확대하였고, 경영의 적정성 부분은 축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배점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현재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간 비중을 중요 요소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지금 8단계로 되어 있는 항목을 3단계 항목으로 간소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기한 변경입니다. 현재 보시는 재검토기한을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시점은 '21년에 평가하는 '19년도 평가 실적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보고를 받으신 후 행정예고와 관계 부처, 규제 심사를 거쳐 2월 말~3월 초에 위원회 의결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옥 부위원장

- 오늘 보고안건 가운데 지역성 지수 평가 개선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열띤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제가 회의를 주관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성 지수 평가를 통해 1,000점 만점에 600점 미만을 받게 되면 보고받은 바와 같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지원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600점 이상을 받았다 고 해서 지역방송사들이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지역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체제작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그에 관련된 엄격한 심사와 선발을 거쳐 우수 제안 프로그램들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성 지수 평가 기준 고시는 일종의 기금 지원의 제한선, 즉 본 심사를 위한 커트라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목들이 다소 복잡했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여도나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등 중요한 평가항목의 배점은 확대했고, 지역성 지수 평가 보고서 작성이 사업자들에게 또 한편에서는 큰 부담되지 않도록 평가 목적이나 연관성이 낮은 항목들은 삭제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약하면 결국 지역성 지수 평가 목적에 맞게 고시를 위한 제한기준의 합리성을 높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애를 많이 써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 통신발전기금이 콘텐츠나 기술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합리성을 당연히 띠어야 하는데 점수 배점 기준, 또 점수 자체가 50점, 100점 단위가 아니고 들쭉 날쭉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말씀을 보태면 부위원장님이 주제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지발 위에 참여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이 중요 평가 항목의 배점 확대인데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같은 경우, 또 지역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무려 배점이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현행 점수는 45점인데 2배가 넘는 개선배점을 100점으로 올리고,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도 80점에서 150점으로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구매가 포함됩니까? 구매는 어떻게 처리했지요?

####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구매도 자체제작에 포함됩니다.

####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우수 작품을 많이 사면 그것도 자체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줍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비싼 프로그램을 사면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뻘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가격으로만 매기는 것 같아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쳤는데 잘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배점도 170점에서 250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우리 언론인들에게 홍보하려고 제가 일부러 유도하는 것입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역에 있는 방송사로서 역할이 중앙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콘텐츠도 자체제작을 통해 육성해야 하고, 그 방송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이전보다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이번에 배점을 개선한 포인트는 바로 지역성, 지역성을 얼마나 더 우리가 강화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대폭 올리고 아무쪼록 이번 지표가 개선되어 적용되면 많은 지역방송사가 굉장히 어렵지만 자체프로그램 제작비율을 높이게 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유인책이 되어서 지역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6-1. 의결사항**

**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04-011)**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고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고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방송 고시 제정 이후 편성의무 비율이 고시에서 제시하였던 목표치에 도달함에 따라 이러한 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방송 편성 비율의 단계적 축소 등 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편성의무 경감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입니다. 추진경과는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고,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안건으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지정기간 연장입니다. 현재 고시에서는 장애인방송 편성 대상 의무사업자를 필수지정 사업자와 고시 의무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에서 고시의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지정하여 공표해 왔습니다. 이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고시에서는 연도별로 단계적 목표치를 제시하여 왔는데 현재 필수사업자 또는 고시의무 사업자별로 이와 같은 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별 의무비율은 유지하되 일각에서 재방송 비율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보도방송사업자에 대해서 화면해설 방송의 편성의무 비율 등 재방송 편성 비율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시청권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편성의무 경감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무제표상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상태 사업자를 3년 이상 적자상태로 사업자 개정하여 규제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수어방송 정의 및 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수어방송이 위치나 크기가 고정됨에 따라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대로 불편함이 있었고, 또 일반인들은 일반인들대로 불편함이 있었는데 수어 영상의 크기나 위치 등을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은 이것을 필요시에 삭제할 수 있는 스마트수어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스마트수어방송을 유도하기 위해 수어방송을 편성할 경우에 편성비율 산정에 있어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가중치 비율에 대해서는 뒤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준수 규정을 신설해서 사업자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면서 일부 의견을 수용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 행정예고(안)는 2019년 40% 이하, 2020년 30% 이하, 2021년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제시됐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엄격한 2022년에 0%까지 목표치를 제시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방송협회에서는 이 비율이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평균 재방 비율이 26~2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하기가 더 어려운 장애인방송에 대해 이 이상의 편성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균형성 측면에서 우리가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정안은 2019년 40% 이하, 2020년 35% 이하, 2021년 30% 이하로 조정해서 오늘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5배의 당초 가중치가 방송사 측과 농아인협회 측 양쪽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가중치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공히 있어서 1.5배보다는 조금 낮은 1.3배 정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시행령상 구체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어서 위임 일탈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뒤 페이지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제3항과 제4항 소명을 요구



할 수 있다거나 위반한 경우에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제1항과 제2항에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품질제고'라는 용어를 가운데에 넣었고,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도 '경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예시하는 등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안건이 의결되면 1월 중으로 관보게재 등을 통해 고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2015년에 고시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안건입니다.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스마트수어방송 활성화 등 장애인방송의 품질이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도 경감되어서 장애인방송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작년 11월 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수어방송 프로그램 주시청대 편성비율 목표치가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아울러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 완화 방안도 특정 방송사업자의 요구에 있어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경영상황을 고려한 조치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공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방송사 스스로 성찰하고 향후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감안해서 완화된 규제 방식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배 과장이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문건에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연설명을 쪽 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빨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청 접근권을 더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한 부분은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재무제표상 4년 동안 적자를 본 방송사에 한해서 경감시켜 주다가 3년으로 줄여줘서 부담을 덜어준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뜰이나 장애인들이 정말 전체 방송에서 보면 지상파든

보도채널이든 중편이든 불과 10% 정도밖에는 장애인방송을 편성하지 않지요?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나마 편성의무를 여기에서 또 덜어 준다, 물론 경영에 어려운 방송사에 한해서, 이것은 장애인들 가뜰이나 볼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덜어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방송사가 어렵다면 방송발전기금은 그런 부분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장애인방송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것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메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사도 벌써 4년, 3년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면 제일 먼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줄이는 것에 돈이 세이브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장애인들 보십시오. 소외계층 장애인들이 볼 프로그램이 도대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심야 쪽, 새벽 쪽에 집어넣고, 그리고 수어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방송 편성비율도 일반적인 방송이 26% 정도 평균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들을 그렇게 일반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볼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그나마 보면 재방송입니다. 그런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는 편성비율까지 낮아져서 방송이 더 없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전체회의에서 여러 번 제의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온라인상 방송만 기다려서 보면 또 재방송을 하고, 비율만 낮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보고 싶을 때 시간 날 때 얼마든지 들어가서 장애인용으로 만든 VOD를 볼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애인 시청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어느 부서인지 제가 구분이나지 않는데 VOD 채널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4기 위원회 주요과제로 말씀 주셨고 들은 바가 있어서 정책연구 수행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상반기에 협의체나 연구반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대상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번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볼까합니다. '볼까'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것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꼭 추진하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가 충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장애인이 50만입니까? 장애인들이 학수고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열어 주어야

합니다. 방통위가 앞장서야 합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이 낮아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도 VOD채널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겠습니다.

##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29분 폐회 】